

##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정 2016.12.1

**제 1 조 (목적)** 본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 제58조에 근거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자자간 형평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은 자본시장법이 정한 바에 따르면 관련 법규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수수료"라 함은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일임자산/자문자산에 적용되는 각종 수수료로서 아래 각호와 같이 구성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2. 판매보수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3. 신탁업자보수 :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자로서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 집합투자기구의 일반사무관리 업무수행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보수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6. 성과보수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며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집합투자업자가 받는 보수(법 제86조, 동 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에 해당하고 집합투자규약에 정의된 경우에만 수령 가능)
7. 판매수수료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수수료를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
8. 환매수수료 :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범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됨
9. 투자일임/자문 기본수수료 :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문계약 자산 또는 투자일임계약자산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와는 관련 없이 받는 보수
10. 투자일임 성과수수료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종료일에 계약자산을 평가하여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운용성과에 따라 부과되는 보수

**제 4 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1. 수수료 부과에 있어 각 계약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책정하되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지 아니한다

2. 수수료 수준은 계약의 특성, 규모, 성과수수료 부과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계약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 **제 5 조 (수수료의 부과절차)**

1. 수수료 수준은 계약의 특성, 규모,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계약 기준으로 경영진이 결정한다
2.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집합투자계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4. 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운용기간중 인상 등의 이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 혹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투자일임수수료 및 투자자문수수료의 경우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투자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수료 지급주기 및 지급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자와 합의하는 투자자문(일임) 계약서에 따른다

**제 6 조 (설명의무)** 자본시장법 제47조 1항 및 동 시행령 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 권유를 할 경우,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한다

#### **제 7 조 (공시 및 통보)**

1. 회사는 법 제58조 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법 제58조 3항에 따라 이 기준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법 제99조 및 동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시기, 금액 등 투자일임수수료의 부과에 관련한 사항을 투자일임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운용하는 계약자산에 대하여 이 기준 시행전 결정된 수수료에 과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